

정조 대 성균관 절제 운영 연구*

정상준** · 여영기***

《목차》

- I. 서론
- II. 「태학생원점절목」과 성균관 거재상황의 변화
- III. 정조 대 절제의 운영양상
 - 1. 전반적 추이
 - 2. 시기별 추이
-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정조 대 절제(節製)의¹⁾ 구체적 시행 양상을 분석하여 정조 대 절제 운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에 과시(課試)는 일반적으로 유생을 대상으로 고강(考講)이나 제술(製述)로 시험보아 우등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시험을 의미하였다.²⁾ 조선전기 유생들

* 이 논문은 정상준(2018), 『正祖代 成均館 節製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6685)

** 제 1저자,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절일제와 황감제가 구분되어 실려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절제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는데, 두 시험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정조 9년(1785)에 발간되어 당시 성균관 과시의 운영상황을 반영하고 있던 『태학지(太學志)』에서 이 두 시험을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최광만(2012),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제 22집 2호, 교육사학회, p. 58.

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성균관 과시는 점차로 조선후기 교육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법제적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장권조(獎勸條)에 수록되어있던 과시는, 『속대전(續大典)』 부터는 일반 과거와 함께 국시로서 제과조(諸科條)에 수록되었고³⁾,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혜택을 주었던 시상은 직부전시(直赴殿試)로 확대되어 사실상 문과급제와 같은 혜택을 주기도 했다.⁴⁾ 『속대전』에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시에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통독(通讀)이, 사학 유생을 대상으로 과시에 승보(陞補)·합제(合製)가, 지방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시에 공도회(公都會)가 실려 있다. 절제는 성균관 유생의 제술능력을 평가하여, 우등자에게 직부회시 혹은 직부전시의 특혜를 주던 과시로 인일제(人日製), 삼일제(三日製), 칠석제(七夕製), 구일제(九日製), 황감제(黃柑製)가 포함된다.

18세기에는 절제의 비중이 점차로 커져 정조 대에는 식년시나 각종 경과(慶科)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절제는 여러 과시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목적이 강했는데, 시관의 구성이 조정의 고관으로 다른 과시보다 위상이 높았고, 때때로 우등자에게 직부전시의 특혜를 주어 사실상 일반과거와 같은 비중을 가졌다.⁵⁾ 이외에도 절제는 경화사족을 성균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당시 경중의 유생들은 강경보다는 주로 제술을 선호하였고, 이들을 성균관에 거채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술시험인 절제가 주목되었기 때문이다.⁶⁾ 성균관 교육의 정상화가 생원·진사의 유입으로부터 시작함을 염두에 둔다면 성균관 운영에서 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절제가 조선후기 과시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 절제 운영의 실제

3) 최광만(2016a), 「18세기 과시운영체제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 26집 1호, 교육사학회, p. 128.

4) 최광만(2015a), 「18세기 과시의 유형」, 『교육사학연구』, 제 25집 1호, 교육사학회, pp. 185-186.

5) 최광만(2016a)의 앞 글, pp. 155-156

6) 『承政院日記』 正祖 5年 8月 6日, 鍾顯曰 每當到記時 則京外多士 其集如雲 而及至釋菜時 散而之四 故年年大享 執事分排 每患不足 至有以一人兼數事之學矣 上曰 此亦關係士習 誠悶事也 上曰 承旨爲國子長時 月講旬製 連爲課試否 鍾顯曰 連有飭教 故不敢廢閣 果爲設行 而未見其實效矣 上曰 賢關之弊 一至於此 何以則勸獎而興起耶 有何矯救之策否 鍾顯曰 恐非一朝一夕之所可矯揉矣 臣知識魯莽 且無平日所講究者 別無意見之可以仰對 惟在博詢諸臣 周咨衆議 必有大更張大變通然後 庶有矯正之望矣 上曰 京華士子 卽是日後卿相 若使濟濟青衿 齊會太學 冬詩夏禮 以盡其培養作成之道 則其在需材育英之方 豈不好也 而士習日渝 文風不振 首善之地 未聞興起 賢士之關 不免空虛 予庸慨然矣 何以則使京華士大夫子弟 樂赴於太學耶 鍾顯曰 儒生輩所樂赴者 不過爲科舉而已 凡於節製試取時 殿試直赴 雖非可論 而至如直赴會試之例 時或許之 則多士輩 似當聳動而樂赴矣.

를 파악하는 일은 조선후기 과시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절제는 그 자체로 연구되기 보다는 과시연구 안에서 과시의 한 부분으로 다뤄졌다. 과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과시의 법제를 분석한 연구, 과시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들 속에서 주로 다뤄졌다.⁷⁾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절제의 기본적인 윤곽은 파악된 상태이지만, 절제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시행 양상에 대한 시기별 연구가⁸⁾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한 시기 절제의 시행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전후하여 절제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시 성균관의 운영방식을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조 대 절제의 운영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 대부터 이미 과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지만, 숙종 대와 영조 대에는 절제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⁹⁾ 게다가 영조 대에는 절제의 시행방식이 빈번하게 변하고, 심지어 기본규정까지 변경되어 절제의 시행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난점이 있다.¹⁰⁾ 반면에 정조 대는 과시의 법제화가 완료되어 절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조 대의 절제 운영은 19세기 절제 운영에 기반이 된다.

-
- 7) 과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는 최광만(2013), 「조선헌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23-2, 교육사학회.; 최광만(2012),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22-2, 교육사학회. 등이 있다. 과시의 법제를 분석한 연구에는 최광만(2015a), 「18세기 과시의 유형」, 『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최광만(2016a), 「18세기 과시운영체제 연구」, 『교육사학연구』 26-1, 교육사학회.; 최광만(2018), 「조선헌기 과시규정의 변화」, 『교육사학연구』 28-1, 교육사학회. 등이 있다. 과시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에는 최광만(2015b), 「숙종 대의 과시정책과 운영」, 『한국교육사학』 37-2, 한국교육사학회.; 최광만(2015c), 「영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3, 한국교육사학회.; 최광만(2015d),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4, 한국교육사학회. 등이 있다.
- 8) 개별과시의 운영상황에 대한 연구에는 박현순(2013),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이 있다. 시대와 분석대상은 다르지만 박현순의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강과 절제는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 성균관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강과 절제가 함께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9) 숙종·영조 재위기간 동안 삼일제, 구일제, 황감제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인일제와 칠석제는 안정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지연(2018), 「숙종-정조대 성균관 과시 운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3-115 참고.
- 10) 최광만(2015c)의 앞 글, pp. 76-77.

II. 「태학생원점절목」과 성균관 거제상황의 변화

영조 후반기 과거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과거의 남설과 시제의 부편중화였다. 영조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유생들을 위무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은사성 과거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은사성 과거는 표문(表文)에 익숙하지 못한 향유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주로 부제(賦題)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남설과 시제의 부 편중화는 요행으로 합격하는 유생들을 증가시켰다.¹¹⁾ 그리고 성균관 과시 운영의 주요 문제점은 통방외 과시의 관행화와 직부전시의 남발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절제에서 두드러졌다. 통방외 절제의 관행화로 인해 유생들은 성균관 거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성균관 유생의 학업장려라는 성균관 과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등자에게 직부전시의 특혜를 주는 관행은 통방외 절제와 맞물려 상재생들이 성균관 거제를 기피하고 통방외 절제만 응시하는 상황을 만들었다.¹²⁾ 영조는 「태학생원점절목(太學儒生圓點節目)」을 통해서 원점 50점을 채운 후에 절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¹³⁾, 「경인정식(庚寅定式)」을 통해 인일제 칠석제에는 직부회시를 삼일제·구일제·황감제에는 직부전시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¹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재위기간동안 통방외 절제의 관행화와 직부전시의 남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조는 이러한 시점에 즉위하였다. 그는 즉위한 직후에 「과폐윤음(科弊綸音)」을¹⁵⁾ 반포하여 현행 인재선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11) 『英祖實錄』 15年 4月 28日, ○上行書講. 論及培養人才之道 諸臣仍言科試之取銘頌 多倖科 不如四六之得實才 反復累百言 上意終不以爲然 以京儒習四六 而鄉儒不能也 臨御以來 多用詞賦取士 或雜出銘頌 蓋欲兼取鄉儒也. 後教曰 殷湯盤銘 周武几杖 亦曰雜乎 入侍諸臣 竝命重推.; 박현순(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p. 165.

12) 최광만(2016a)의 앞 글, p. 138.

13) 『承政院日記』 英祖 18年11月12日, ○壬戌十一月十二日申時 上御熙政堂. …(중략)… 圓點卽古例 宜遵乎此 何必月課 今後則以五十點爲準 節製 乃泮儒應製者 而今則反爲庭試 一不居齋 而以泮儒應製 此豈李善(君)行之義乎 今後則雖不可一時革舊習 宜遵舊制. 凡節製時 當間間只取太學 而當於命招館閣之時 先以太學準點儒生試取事下教 太學知悉舉行 …(중략)…

14) 『英祖實錄』 46年 7月 6日, ○庚戌/行書講 教曰 近者百弊 由科舉類數 古則節製赴會試 其後直赴殿試 猗歟爲青衿之盛意也 遵古抑濫 亦時中之義 今後三日 九日製 黃柑 一遵昔年例賜第 人日七夕製 皆賜會試 而竝付增別試 講經生春秋到記 勿論親臨命官 依舊例皆赴殿試 而居首者多 則比較無過一人 日次殿講 皆許會試 而此則居首雖多 勿爲比較. 凡會試給分之類式年依舊例舉行 以示予暮年弛張之意.

15) 『正祖實錄』 卽位年 5月 28日, ○戊戌/下科弊綸音曰 予聞諸程伯子之言曰 天下事 大變則大益 小變則小益 方今朝廷大弊 莫有甚於科舉 倖占者滔滔 一年甚於一年 一日甚於一日 其將人不得爲

였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이듬해에 「태학생원점절목(太學生圓點節目)」을¹⁶⁾ 반포하였다. 「태학생원점절목」의 기본 취지는 원점생을 중심으로 성균관 과시를 운영하고 원점생을 매년 관리하여 많은 유생들을 성균관에 유입하는 것이다. 절목의 조치는 다른 시험에 비하여 절제에 강하게 적용되었다. 정조는 원점유생절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특명이 없을 경우 오직 준점 생원·진사(生員·進士)만 응시하게 하여 절제를 원점생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절제 응시를 위한 준점 기준을 50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원점의 유효기간을 다음해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는 준점 기준을 낮추어 윤회거재를 활성화 시키려한 조치였다. 유생들이 원점유생을 대상으로 한 과시에 무리 없이 응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원점 30점을 채워야했기 때문이다.¹⁷⁾ 정조 5년(1781) 무렵 절목은 실효를 거두었다.¹⁸⁾ 이때 성균관에는 거재생들이 가득차고 반촌에는 성균관 거재를 위해 유생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조가 내린 전교는 당시의 정황을 보여준다.

거재유생을 100인으로 정한 것은 최근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기에 식년 전에 성균관 절목을 정비하여 오래된 옛 제도를 회복시켰는데, 근자에 들으니 한양에 온 유생들이 정원수를 넘어서 반촌에서 유숙하는 것을 면하지 못함을 탄식한다고들 한다. 이 어찌 일전에 (절목을) 신칙한 본의겠는가? 식당의 정원수 100명의 고레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성균관에 초기를 상고해 보라.¹⁹⁾

인용문에 의하면, 「태학생원점절목」 반포 후에 성균관에 거재정원이 가득찼고, 성균관에 거재하고자하는 유생은 많지만 성균관에 거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30점으로 낮춘 준점 기준으로 거재유생의 회전율을 높아졌지만, 2년의 원점 유효기간으로 인해 유생들이 매년 성균관에 거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경중의 유생들을 성균관에 모이게 하고자 했던 절목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러나 이제 성균관에 거재하며 원점을 채우기를 원하지만, 정원 수로 인

人 國不得爲國矣 此豈非所可大變者乎 大抵科擧之制 非古也 …(중략)….

16) 『正祖實錄』 1年 6月 13日, ○申明居齋儒生圓點之法 成均館進圓點節目 …(중략)….

17) 정지연(2018)의 앞 글, p. 125.

18) 당시 원점제도에 대한 유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절목이 반포된 직후 정조 2년에도 유생들은 춘도기, 추도기, 절제 등의 과시가 시행되지 않자 성균관에 거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절제의 시기가 임박하면 성균관에 거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19) 『承政院日記』 正祖 5年 7月 23日, 傳曰 居齋儒生 定以百額 非近年新定 式年前 因本館節目釐正 申復久遠古例 而然也 近聞儒生之入城者 以元額過數 未免滯留泮村之嘆云 是豈日前申飭之本意 食堂百額 古例 始於何時 …(중략)….

해 거제하지 못하는 유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정조 8년(1784)에는 거제유생의 적체문제가 더욱 심해졌다. 아래의 인용문은 유생적체 문제에 대해 정조와 유생 홍우연(洪祐淵, ?-?)이 나눈 대화이다.

정조: 들어보니 유생이 액수보다 많아 식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정유년(丁酉年, 1777)의 방에든 이들조차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 원점이 모두 찰 기약이 없을 것이다. 어제 이 일에 대해 반재 유생에게 물으니 여러 의론이 모두 이와 같았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 유생 중 의견이 있는 자들은 차례로 나와 아뢰거라.

홍우연: 식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생이 매우 많으니 원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것이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들어오게 허락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정조: 100명의 액수는 선조의 성현으로 갑작스럽게 고치기 어렵다.

홍우연: 그렇다면 한 달을 한도로 하고, 유생이 20점을 채운 뒤에 새로운 유생이 들어오면 기존의 유생을 나가게 하여 차례로 원점을 채우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조: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서울에 와 있는 향곡의 유생은 현관(賢關)이 아니면 머물러 있기가 어렵다. 만약 원점이 이미 찼다고 하여 갑자기 물러가게 한다면 이 또한 가련하다. 액수에 구애받지 말게 하는 것은 선조의 현장을 어기는 일이고, 새 유생이 들어오면 전에 있던 유생을 나가게 하는 것은 이 또한 선비를 대우하는 본뜻이 아니니, 어느 모로 보나 갑자기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다.²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학생원점절목」의 목적은 많은 유생들을 성균관에 윤회거제시켜 원점유생의 숫자를 늘리고, 원점 명부를 통해 성균관에 거제하지 않는 정원 외 유생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에 의하면, 정유년(1777, 정조 1년) 방(榜)부터 생원·진사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유년(1777, 정조 1

20) 최광만(2015d)의 앞 글, p. 110.

21) 『日省錄』 正祖 8年 1月 7日, ○…又教曰 聞儒生過於額數 未參食堂人 厥數夥然云 至於丁酉榜 亦不得入 如此則圓點之盡充無期矣 昨以此問于泮齋 則諸議皆如此 何以區處則爲好耶 諸生中有所見者 次次進奏也. 儒生洪祐淵等曰 儒生未參食堂者甚多 圓點之難以盡充 誠如聖教 若勿拘額數 通融許入則似好矣. 予曰 百額卽 先朝成憲 有難猝改矣. 祐淵等曰 然則限以一朔 儒生準二十點後 新入故出 以爲次次準點之地則似好矣. 予曰 予意非不念此 而但鄉曲儒生赴京者 非賢關難以住著 若以圓點之已準而遽令退去 則此亦可矜 大抵勿拘額數 則有違 先朝之憲章 新入故出 則亦非待士之本意 以此以彼 猝難輕議矣. 由延生門還內.

년) 식년시 방 이후로 홍우연과의 대화 시점까지 4번의 소과가 더 설행되었는데,²²⁾ 총 1000여명의 생원·진사가 거재를 원하더라도 거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많은 유생들을 성균관에 윤회거재 시키고 원점 명부를 통해 정원 외 유생까지 관리하려고 했던 원점절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정원수로 인해 거재하지 못하는 유생들은 성균관의 학사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고, 원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시응시에서 조차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²³⁾

정조 5년(1781)과 정조 8년(1784)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당시 성균관의 거재정원은 유생의 거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원점절목을 통해 성균관이 관리하는 유생의 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늘어난 성균관 거재 수요로 인해 거재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절목의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우연은 액수를 제한하지 않고 매 달 거재일수를 20일로 제한하여 원점을 채운 유생들을 내보내 강제로 윤회거재 시키자는 의견을 내지만, 정조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다. 성균관의 거재정원수를 늘릴 수도 없고 거재일수 제한을 통해 강제로 윤회거재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조가 취한 조치는 통방외 절제의 확대였다.

정조는 논의 후에, 정조 8년(1784)에 5번의 절제 중 4번의 절제를 통방외로 시행한다. 이는 정조 7년(1783)까지 연평균 통방외 절제가 1.9번 시행됐던 것에 비하여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정조 8년(1784)을 기점으로 통방외 절제는 확대된다. 통방외 절제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원점유생의 수는 감소하였다. 정조 11년(1787)부터 원점유생이 적다는 정조의 언급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정조는 이 원인을 절제를 매번 통방외로 시행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²⁴⁾ 당시 경중의 유생들은 성균관에 거

22) 네 번의 소과는 정조 4년(1780) 식년시, 정조 7년(1783) 증광시, 정조 7년(1783) 식년시, 정조 10년(1786) 식년시이다.

23) 최광만(2014), 「『태학성전』의 학사운영규정 분석」, 『교육사학연구』 24-2, 교육사학회, p. 212.

24) 『日省錄』 正祖 11年 3月 6日, 成均館以大提學 金鍾秀在外三日製不得舉行啓 教曰圓點生赴試自是定式 而近來準點者數少 此後申飭三日製待下教設行.; 『日省錄』 正祖 12年 3月 7日, ○教曰 觀於三日製入門與收券人數 僅爲百餘 近來準點之皆不着意可知 且未必不由於節製之每通方外 如是則圓點節目申復之本意果安在哉 每歲時試講製 亦有一體修復之命而年前一再爲之伊後未免拋置宜乎 諸生之怠惰從 …(중략)…; 『日省錄』 正祖 15年 3月 3日, …(중략)… 教以今日坐齋之日也 三製勢難爲之 當於旬後念前試取 而近來圓點有名無實 準百點者固無論 當年內準三十點元式者 亦甚罕 是豈設置之本意乎 卿其申飭俾勿如前解弛也.;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9月 18日, ○朴奎淳以成均館大司成意啓曰 圓點之徒有其名 以謄啓者觀之 數甚少 趁菊製 各別嚴飭 以加數臨時草記事 曾有傳教矣 臣依下教 連爲嚴飭於生進諸儒 使之入參圓點 而到今抄出 則前後準三百點一百四

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²⁵⁾, 통방외 절제가 확대됨에 따라, 경중의 유생들은 성균관에 거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점은 심각한 문제였다. 성균관에 거재하지 않은 유생이 절제에서 우등을 차지하는 것은 거재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균관 과시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조가 취한 통방외 절제 확대조치는 당장 유생이 적체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거재유생의 학업장려라는 성균관 과시본연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법정 과시는 아니지만, 본인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응제에 주목하였다. 통방외 절제의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응제를 사실상의 원점과로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²⁷⁾ 그리고 정조 8년(1784) 4월 상재생 응제가 시행된다.²⁸⁾ 일차유생전강일에 별도로 상재생을 대상으로 응제하게 한 것이다. 이 시기부터는 태학유생 응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제가 시행되고 양적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절제는 정조 8년(1784) 구일제를 대운차로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로 시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정조 18년(1794) 부터는 응시자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절제 운영의 성격은 응시자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조 대 절제의 운영양상을 살펴보겠다.

Ⅲ. 정조 대 절제의 운영양상

이 장에서는 정조 대 절제 운영의 전반적 추이를 살펴본 후에 시기별로 응시대상, 응시규모, 시제, 은사규모를 중심으로 절제의 운영양상을 살펴보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속대전에 포함된 절제의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²⁹⁾ 같다.

十人 辛亥條準三十點一百四十四人 壬子條準三十點一百三十二人 而下教以後 加數儒生 爲四十八人之意 敢啓 傳曰 知道.

25) 『英祖實錄』 18年 4月 4日, ○命成均館 講定儒生圓點節目 …(중략)… 寅明言 居泮儒生有圓點之規 而近來京儒率多厭避不居泮 今宜申飭 使諸儒皆準點 然後始許赴科 而量宜定式 則諸儒不得不相聚居泮矣 領議政金在魯及大司成金尙星 亦言其便 上從之. …(중략)…

26) 최광만(2015c)의 앞 글, p. 80.

27) 최광만(2015d)의 앞 글, p. 124.

28) 『承政院日記』 正祖 8年 4月 25日 己酉 6/21 기사 1784年, ○以日次儒生殿講書啓 傳于趙尙鎮 曰 上齋生雖欲點下 皆必自不 一竝置之 明朝別下御題 遣史官齋傳 此舉案外 如有來參明日食堂者 許令一體應製 入格人當依向日例 以紙筆墨施賞 以此 分付成均館.

<표 1> 『속대전』의 절제규정

| 시험 | 응시대상 | 시관 | 시행시기 | 은사 |
|-----|-----------------------|----------------------------|-----------------|----------|
| 절일제 | 원점유생, 통방외 품지에따라 시행 | 정부·육조·제관당상관, 특명시사 시 대제학 | 1월 7일 | 특명시 직부전시 |
| | | | 3월 3일 | |
| | | | 7월 7일 | |
| | | | 9월 9일 | |
| 황감제 | | 대제학 | 황감(黃柑) 진상 시기 | |

1. 전반적 추이

정조 재위기간(1776년 3월 10일-1800년 7월 2일) 동안 법전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시험별로 24번씩 총 120번의 절제가 설행 될 수 있었다. 정조 대에 절제는 112번(93.3%)이 시행 되었는데, 재위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일제, 황감제는 빠짐없이 시행되었고 인일제, 삼일제, 칠석제 역시 정조 5년(1781) 이후에는 정조 20년(1796) 삼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설행 되었다.³⁰⁾ <표 2>는 정조 대 절제의 전반적 시행상황을 시기별로 조사한 것이다.

<표 2> 정조 대 절제 시행상황

| 구분 | 인일제 | 삼일제 | 칠석제 | 구일제 | 황감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5 | 6 | 4 | 8 | 8 | 31 |
| 정조8년~17년 | 10 | 10 | 10 | 10 | 10 | 50 |
| 정조18년~24년 | 7 | 6 | 6 | 6 | 6 | 31 |
| 합계 | 22 | 22 | 20 | 24 | 24 | 112 |

112번의 절제는 각각 원점유생절제로 40차례, 통방외 절제로 72차례가 시행되었다. 각 시험별로 원점유생 절제, 통방외 절제의 시행빈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29) 『續大典』 禮典, 諸科, ○凡節製或並試方外儒生 或只取泮儒稟旨施行 (只取泮儒則一從圓點數許赴) 元月七日三月三日七月七日九月九日設行 有故則當月內無故日退行 ○政府六曹諸館堂上官詣泮宮試取 科次以啓或特命試士 則牌招大提學(有故則弘文提學又有故則藝文提學) 與承旨偕往成均館堂上官亦同參收卷詣闕以入直玉堂或春坊官二員對讀科次 ○居首以下直赴則有特旨乃行.
30) 설행되지 않은 시험은 정조 즉위년(1776) 칠석제, 정조 1년(1777) 인일제·칠석제, 정조 2년(1778) 삼일제, 정조 3년(1779) 칠석제, 정조 4년(1780) 인일제·칠석제, 정조 20년(1896) 삼일제이다.

<표 3> 정조 대 원점유생·통방외 절제 시행 상황

| 구분 | 인일제 | 삼일제 | 칠석제 | 구일제 | 황감제 | 합계 |
|--------|----------|----------|----------|----------|----------|-----------|
| 원점유생절제 | 11(50%) | 7(32%) | 10(50%) | 8(33%) | 4(20%) | 40(36%) |
| 통방외절제 | 11(50%) | 15(68%) | 10(50%) | 16(67%) | 20(80%) | 72(64%) |
| 합계 | 22(100%) | 22(100%) | 20(100%) | 24(100%) | 24(100%) | 112(100%) |

영조 때까지 관행적으로 통방외 절제로 시행된 것에 비하면 원점유생절제의 빈도가 높아졌지만 통방외 절제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일제와 칠석제는 원점유생 절제와 통방외 절제의 시행비율이 50%로 같지만, 삼일제, 구일제의 경우 약 70%가, 황감제는 80%가 통방외 절제로 시행되었다. 삼일제·구일제·황감제가 통방외 절제로 자주 시행된 것은 시험의 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속종·영조대에 인일제·칠석제는 대부분 결행되었고, 삼일제·구일제·황감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렇다면 시험별 은사규모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표 4>는 시험별로 은사규모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 4> 정조 대 절제 시험별 은사규모

| 구분 | 직부전시 | 직부회시 | 급분 | 사물 | 기타 | 합계 |
|-----|----------|-----------|-----------|-----------|----------|--------------|
| 인일제 | 10(3.6) | 25(9.2) | 210(76.6) | 29(10.6) | 0(0.0) | 274(100.0) |
| 삼일제 | 9(2.5) | 129(35.2) | 172(47.0) | 56(15.3) | 0(0.0) | 366(100.0) |
| 칠석제 | 0(0.0) | 19(6.7) | 125(44.3) | 79(28.1) | 59(20.9) | 282(100.0) |
| 구일제 | 11(3.8) | 114(39.2) | 98(33.7) | 68(23.3) | 0(0.0) | 291(100.0) |
| 황감제 | 27(15.3) | 29(16.4) | 53(29.9) | 68(38.4) | 0(0.0) | 177(100.0) |
| 합계 | 57(4.1) | 316(22.8) | 658(47.3) | 300(21.6) | 59(4.2) | 1,390(100.0) |

시험별로 은사인원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칠석제에서는 직부전시의 은사를 하사한 적이 없다는 점과, 소과관련은사를 하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일제와 구일제의 경우 은사규모에서 직부회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 은사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직부전시는 4.1%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시기별 절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겠다.

2. 시기별 추이

1)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의 운영양상은 응시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은 정조가 「태학생원점절목」을 반포하고 원점생 중심으로 절제를 운영하고자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시기이다. 더불어 직부전시의 제한과 시제 조정을 통해 성균관의 교육적 효과와 인재선발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우선 이 시기 절제의 통방외 여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시기에 절제는 총 31회 설행되었다.

<표 5>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 통방외 시행 여부

| 구분 | 원점유생 절제 | 통방외 절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16(51.6) | 15(48.4) | 31(100.0) |

<표 5>를 보면 이 시기에는 원점유생 절제와 통방외 절제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시행되었다. 원점절목을 반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모습은 다소 어색해 보이지만, 이 시기에 절제에 응시하는 인원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표 6>은 이 시기 절제의 수권 수·참여자 수 보고사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6>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 수권 수·입문자 수 보고사례

| 번호 | 왕년 | 시험종류 | 수권 수 | 입문자 수 | 통방외여부 |
|----|-------------|------|-----------|--------|-------|
| 1 | 정조 원년(1776) | 구일제 | 표 116장 | | X |
| 2 | 정조 1년(1777) | 구일제 | 표 120장 | | X |
| 3 | 정조 1년(1777) | 황감제 | 표 미상 | 700인 | O |
| 4 | 정조 2년(1778) | 인일제 | 표 36+@장 | 140인 | X |
| 5 | 정조 2년(1778) | 칠석제 | 표 291장 | | O |
| 6 | 정조 2년(1778) | 구일제 | 표 260장 | | O |
| 7 | 정조 2년(1778) | 황감제 | 표 93장 | | X |
| 8 | 정조 3년(1779) | 삼일제 | 총 300장 | | O |
| 9 | 정조 3년(1779) | 황감제 | 표 132장 | | O |
| 10 | 정조 5년(1781) | 황감제 | 전 219장 | | O |
| 11 | 정조 6년(1782) | 인일제 | 부 87장 | | X |
| 12 | 정조 6년(1782) | 구일제 | 이십운을 312장 | | O |
| 13 | 정조 6년(1782) | 황감제 | 명 | 2,740인 | O |
| 14 | 정조 7년(1783) | 인일제 | 표 300+@장 | | O |
| 15 | 정조 7년(1783) | 칠석제 | 표 72장 | | X |

<표 6>을 보면 정조 6년(1782) 황감제를 제외하고는 원점유생을 대상으로 한 절제의 수권 수는 100장 전후이고, 통방외 절제의 수권 수는 300장 전후이다. 정조 6년(1782) 황감제의 입문자 수는 2,740인인데 이는 하루 전인 11월 28일에 정시 초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시에 응시하기 위해 향유들이 상경하였는데, 이들을 위무하기 위해 경유와 향유를 나누어 한명씩을 거수로 선발하였다.³¹⁾ 이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권의 수가 300장미만의 분포를 보인다. 정조 5년(1781)에 원점을 채운 유생들이 234인으로 보고되는데³²⁾ 당시 원점유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이 시기의 통방외 절제에 참여했던 유생들은 원점을 채우기를 시작했지만 아직 30점을 다 채우지 못한 유생들이거나 원점을 채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생원·진사 및 사학유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제를 살펴보자. 정조는 「과폐윤음」에서 경사와 시무에 밝은 자를 이상적인 인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제로 책(策)을 꼽았다. 그는 과거를 통해 ‘실재(實才)’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과문도 실질적으로 쓰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영조가 표문에 익숙하지 못한 향유들을 위해 부제를 주로 출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부는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어서 변별력이 없고, 실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제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겼었다.³³⁾ 정조는 이러한 인식하에 교육·인재선발의 성격이 강한 시험은 표(表)·책(策)·전(箋)·배율(排律) 등으로 출제 하였고, 폭넓은 유생층을 포용해야 하는 시험은 부(賦)·명(銘)·송(頌)·조(詔)로 출제하였다.³⁴⁾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시제는 정조가 실재를 구할 수 있는 과목으로 주목한 표·책·전·배율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

31)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1月 29日, …(중략)… 彦鎬憲進 書觀豐閣銘 上曰 以此命題 卽是祈年之意矣 徽之曰 題意誠好矣 仍命懸題 引儀唱四拜 儒生等行拜禮訖 各就坐 上曰 諸試官退在摺文院可也 徽之等承命退出 命書榻教曰 刑房爲兵房 兵房爲吏房 吏房爲刑房 宇鎮曰 試官李在協 以典牲提調 犧牲看品出去 何以爲之乎 命書榻教曰 典牲提調李在協許遞 今日政差出 上曰 試券隨所捧先考 可也 徽之等進前分考 上曰 今番科作 廣數抄出 然後不失其實才矣 徽之曰 聖教誠然矣 考訖仍命合考 上曰 京鄉各取一人則好矣.

32) 『日省錄』 正祖 5年 7月 5日, ○成均館啓言 伏奉聖教 馳詣泮宮 招致諸生 以聖教內辭意 一一布諭 而月講則自前前月下旬 至今月上旬 連五次設行 句題則連四次出題 而今朔上旬 姑未及設行 圓點儒生已準式者 合爲二百三十四人 教以 爾其著意 月講句題 準式設行 無或間輟也 明日依向者例 召見居齋儒生 試講試製 爾其率來待候於集春門外.試官亦依近例 令政院館堂閣臣中擬入.

33) 『英祖實錄』 15年 4月○ 28日, 上行書講. 論及培養人才之道 諸臣仍言科試之取銘頌 多倖科 不如四六之得實才 反復累百言 上意終不以爲然 以京儒習四六 而鄉儒不能也 臨御以來 多用詞賦取士 或雜出銘頌 蓋欲兼取鄉儒也 後教曰 殷湯盤銘周武几杖 亦曰雜乎 入侍諸臣 茲命重推.

34) 박현순(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한국문화』, 4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176-178.

도가 낮았다고 여겨진 부·명·송·조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표 7>은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의 시제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7>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 시제 분포

| 구분 | 표·책·전·배울 | 부·명·송·조 | 복수시제 | 미상 | 총계 |
|--------|----------|---------|--------|--------|-----------|
| 즉위년~7년 | 25(80.7) | 4(12.9) | 0(0.0) | 2(6.4) | 31(100.0) |

<표 7>을 보면 이 시기 절제의 시제는 대부분 표·책·전·배울로 출제되었다. 표·책·전·배울은 형식이 복잡하고 많은 수련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조가 실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절제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시제의 분포는 시제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정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은사 규모를 살펴보자. <표 8>은 이 시기에 시행된 절제의 은사 규모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8>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 은사 규모

| 구분 | 직부전시 | 직부회시 | 급분 | 사물 | 기타 | 합계 |
|--------|--------|----------|----------|----------|--------|------------|
| 즉위년~7년 | 9(5.9) | 41(27.0) | 41(27.0) | 61(40.1) | 0(0.0) | 152(100.0) |

<표 8>을 보면 전체 은사규모에서 직부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9회(5.9%)로 매우 낮고 직부회시와 급분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조가 처음 의도했던 직부전시 은사를 제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9>는 시험별 직부전시 인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9>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절제 시험별 직부전시 인원

| 구분 | 인일제 | 삼일제 | 칠석제 | 구일제 | 황감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1(11.1) | 0(0.0) | 0(0.0) | 0(0.0) | 8(88.9) | 9(100.0) |

매번 직부전시를 하사했던 황감제를 제외하고는 직부전시 은사는 1회 밖에 없었는데, 정조 3년(1779) 인일제에서 직부전시를 하사하였다. 수석을 차지한 생원 이복윤(李福潤)이 을미년(1775, 영조51) 방에서 과방되어 애석하게 생각하였는데, 인일제에서 거수를 하자 특별으로 직부전시를 내린 경우이다.³⁵⁾ 이 외에는 직부전시를 하

《교육사학연구》 제33집 제1호(2023. 04.)

사하지 않았는데 상격을 잘 제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이 시기는 성균관의 거재정원이 관학유생의 거재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통방외 절제가 기존보다 확대되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에 절제는 총 50번 설행되었다.

<표 10>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절제 통방외 시행 여부

| 구분 | 원점유생 절제 | 통방외 절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16(51.6) | 15(48.4) | 31(100.0) |
| 정조8년~17년 | 13(26.0) | 37(74.0) | 50(100.0) |

<표 10>을 보면 대부분의 절제가 통방외 절제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점유생 절제와 통방외 절제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시행되었던, 첫 번째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 시기에는 응시하는 인원의 규모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1>은 두 번째 시기 절제의 수권 수·참여자 수 보고사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1>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절제 수권 수·입문자 수 보고사례

| 분류 | 왕년 | 시험종류 | 수권수 | 입문자 수 | 통방외여부 |
|----|--------------|------|----------|----------|-------|
| 1 | 정조 8년(1784) | 구일제 | 표, 부 | 18,000여인 | O |
| 2 | 정조 9년(1785) | 삼일제 | 표, 부 | 2,000여인 | O |
| 3 | 정조 12년(1788) | 삼일제 | 표 112장 | - | X |
| 4 | 정조 12년(1788) | 칠석제 | 표 514장 | - | O |
| 5 | 정조 12년(1788) | 황감제 | 미상 403여장 | - | O |
| 6 | 정조 13년(1789) | 황감제 | 표 105+@장 | - | O |
| 7 | 정조 14년(1790) | 삼일제 | 명 989+@장 | - | O |
| 8 | 정조 14년(1790) | 황감제 | 부 5-60장 | - | O |
| 9 | 정조 15년(1791) | 인일제 | 미상 | 100여인 | X |
| 10 | 정조 17년(1793) | 구일제 | 표 | 2,357인 | O |

35)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月 7日, …(중략)… 仍命書傳教曰 人日製居首生員李福潤 聞是乙未榜中人 此等人之混罷 在國法固然 而亦可謂玉石俱焚 予嘗矜之 今適居首 事當依近例直赴會試 而人七製有特教 則賜第既載大典 特爲直赴殿試 之次進士崔光泰直赴會試 …(중략)…

<표 11>을 보면 첫 번째 시기보다 평균 응시 인원의 수가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원점유생 절제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통방외 절제의 경우, 18,000여인이 참여한 사례나 2,000여인이 참석한 경우가 보인다. 정조 8년(1784) 구일제는 대운차로 시행하였는데 하루 전 9월 19일에 정시 초시가 있어 향유들이 대거 상경하여 이들을 위무하기 위해 경유와 향유를 나누어 선발하였다.³⁶⁾ 경유는 표로 향유는 부로 시험하였다. 정조 9년(1785) 삼일제는 이틀 후인 3월 11일에 알성시가 있어 경내에 유생이 많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표와 부를 나누어 시험하였다.³⁷⁾ 정조 17년(1789) 구일제는 이틀 후인 9월 9일에 열릴 친림시사와 날짜가 겹쳐 통방외로 시행한 경우이다.³⁸⁾ 정조 17년(1789) 구일제의 입문자 수는 평상시 보다 많은 편이었지만, 과거로 인해 향유가 상경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로만 시험하였다. 이처럼 두 번째 시기부터는 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과거시험이 있는 경우 날짜를 조정하여 절제를 통해, 상경해 있는 유생들을 위무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시제를 살펴보자. <표 12>는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절제 시제 분포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2>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절제 시제 분포

| 구분 | 표·책·전·배울 | 부·명·송·조 | 복수시제 | 미상 | 총계 |
|----------|----------|----------|----------|--------|-----------|
| 즉위년~7년 | 25(80.7) | 4(12.9) | 0(0.0) | 2(6.4) | 31(100.0) |
| 정조8년~17년 | 21(42.0) | 14(28.0) | 13(26.0) | 2(4.0) | 50(100.0) |

<표 12>에서 눈에 띄는 점은 표·책·전·배울의 비중이 낮아지고 복수시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절제에 향유가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향유들이 대소과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했을 때 절제를 통방외로 시행하여 향유들을 응시하게 했

36) 『承政院日記』 正祖 8年 9月 18日, …(중략)… 仍命書傳教曰 京外觀光儒生 其數甚多 且值無前邦慶 欲寓同慶之意 今番九日製之特命 以大輪次設行 亦由於是 再明日大輪次 以賦表兩題試取 賦取鄉表取京 京鄉各賜直赴 而之次以下 亦欲多數試取 預令成均館知委 諸生入門紛沓之弊 不可不念 弘化東西挾門 宣仁 通化等門 使之分門以入 兩具及療飢之需 勿禁 丕闡堂既設試場 大輪次處所以春塘臺爲之 當親臨 以此知悉舉行 …(중략)…

37) 『承政院日記』 正祖 9年 3月 7日, ○ 乙巳三月初七日二更五點 上御重熙堂 禮房承旨入侍時 左副承旨徐龍輔 假注書李敬五 記事官李崑秀 尹行任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教曰 三日製之姑未設行 欲待鄉儒之齊會 三明日當入清齋 大提學再明日與承旨偕往泮宮 儒生試取以來 通方外事 分付 宜念鄉儒備券之弊 初九日三製時 以大好紙呈券事 亦爲 分付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38) 『承政院日記』 正祖 17年 9月 7日, ○ 傳于洪明浩曰 再明日試射相值 九日製明日爲之 通方外 弘文提學 待開門牌招.

《교육사학연구》 제33집 제1호(2023. 04.)

기 때문이다. 이때 정조는 경유와 향유를 각각 다른 시제로 시험하였다. 이는 변려문을 통해 관학유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변려문에 익숙치 않은 향유를 배려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복수시제로 시험한 경우는 주로 경유와 향유로 혹은 생원·진사와 유학으로 나누어 표·전과 부로 출제되었다. 정조는 향유를 실재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경표향부, 생·진표유학부의 형태로 시제를 분리하여 교육·인재선발과 향유위무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이런 방법은 성균관유생교육과 인재선발이라는 절제 본연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절제의 시행 방식을 이용해서 향유를 위로하는 묘수로 보인다. 다음으로 은사 규모를 살펴보자. <표 13>은 이 시기에 시행된 절제의 은사 규모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3>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절제 은사 규모

| 구분 | 직부전시 | 직부회시 | 급분 | 사물 | 기타 | 합계 |
|----------|---------|-----------|-----------|-----------|---------|------------|
| 즉위년~7년 | 9(5.9) | 41(27.0) | 41(27.0) | 61(40.1) | 0(0.0) | 152(100.0) |
| 정조8년~17년 | 31(5.1) | 126(20.7) | 249(40.9) | 144(23.6) | 59(9.7) | 609(100.0) |

<표 13>에서 주목되는 점은 은사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직부회시와 급분의 은사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응시자의 규모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 18,000명이 입문한 정조 8년(1784) 구일제 대운차에서는 68명에게 직부회시의 은사를 내리고³⁹⁾, 경표향부로 시행하는 대규모 절제의 경우에는 10명이상에게 급분을 주었는데, 이런 점으로 인해 은사규모가 커졌다. 기타 은사는 소과관련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정조 14년(1790) 칠석제에서 내려졌다. 3일 전인 8월 4일 증광 감시 초시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각도의 유생들이 상경하였다. 정조는 답안지에 출신도를 적게 하고, 각도별로 거수한 유학은 진사방(進士榜)에 직부하게 하고, 지차를 포함한 50인에게는 생원과 진사일 경우에는 각각 1분씩 주어 증광 동당초시(東堂初試)에 응

39) 『承政院日記』 正祖 8年 9月 20日, 上命書傳教曰 大輪次九日製 表居首進士韓興裕 賦居首幼學申驥顯 竝直赴殿試 表之次幼學俞聘柱 幼學洪鼎夏 生員李在治 進士李永甲 生員朴喆源 趙雲綱 李寅默 幼學呂善容 李勉翼 申鑿 進士李晚祥 徐興輔 任弘常 幼學金履度 生員尹光垂 幼學柳星會 生員南寅老 洪景厚 進士金載翼 幼學徐有獻 生員朴宗洪 幼學安業 林秉遠 進士李取賢 任好常 幼學李衡采 李在紹 洪祐淵 趙桓鎮 賦之次幼學李天章 進士金復仁 金秀臣 幼學李天培 洪樂昇 梁德申 進士金禹儉 幼學李邦玉 權儔 李以性 通德郎朴宗翊 幼學權倚 生員沈鳳錫 幼學魚用翼 鄭夏善 生員閔思永 進士李基崇 幼學尹秀漢 進士崔壽亨 通德郎鄭履益 進士吳彥載 幼學李宜昇 通德郎張履信 幼學李躋泰 李憲玉 李普源 進士李準海 幼學徐宏修 金秀人 進士權燁 幼學閔景燾 辛師夏 尹濟純 鄭奎觀 進士沈玉賢 幼學趙台錫 崔履亨 通德郎李訥模 幼學崔鎮珏 竝直赴會試.

시할 자격을 주고, 유학은 증광 감시복시에 직부하게 하였다.⁴⁰⁾ 직부전시의 경우 은사자는 늘어났지만 전체 은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명(5.1%)으로 그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였다. <표 14>는 시험별 직부전시 인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14>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절제 시험별 직부전시 인원

| 구분 | 인일제 | 삼일제 | 칠석제 | 구일제 | 황감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1(11.1) | 0(0.0) | 0(0.0) | 0(0.0) | 8(88.9) | 9(100.0) |
| 정조8년~17년 | 5(16.1) | 6(19.4) | 0(0.0) | 8(25.8) | 12(38.7) | 31(100.0) |

<표 14>를 보면 첫 번째 시기와는 달리 다양한 시험에서 직부전시의 은사가 내려진다. 두 번째 시기에도 직부전시 은사는 비교적 잘 제어되었는데 대운차와 같은 대규모 절제나 친림 절제 때에만 직부전시의 은사를 하사하였다.

3)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이 시기는 절제에 응시하는 유생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세 번째 시기에 절제는 총 31번 설행되었다.

<표 15>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절제 통방외 시행 여부

| 구분 | 원점유생 절제 | 통방외 절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16(51.6) | 15(48.4) | 31(100.0) |
| 정조8년~17년 | 13(26.0) | 37(74.0) | 50(100.0) |
| 정조18년~24년 | 11(33.2) | 20(66.8) | 31(100.0) |
| 합계 | 40(35.7) | 72(64.3) | 112(100.0) |

40) 『承政院日記』 正祖 14年 8月 7日, …(중략)… 命書傳教曰 今番七日製 特設於監試初試榜出之後者 爲京外咸聚 而科名亦異於凡科也 各於試券 亦令書其道名 已有料量者存 及其坼名 居首者 純是幼學 果驗當初所料 亦可謂不偶 賜大科 雖稱造化 賜小科 特造化中小造化 何拘前例 京居首幼學崔在鉉 京畿居首幼學尹永吉 原春道居首幼學權玉成 黃海道居首幼學吳翼喆 平安道居首幼學李天用 忠清道居首幼學中秉 全羅道居首幼學洪重燮 慶尙道居首幼學柳光培 咸鏡道居首幼學鄭芝春 竝直付進士 榜 京之次幼學洪秀俊等 京畿之次幼學李東亮等 原春道之次幼學金德基等 黃海道之次進士蔡一揆等 平安道之次幼學吳孟麟等 忠清道之次幼學李儒一等 全羅道之次幼學李寅燾等 慶尙道之次幼學崔茂等 咸鏡道之次幼學尹濟兼等 五十人 生進則各給一分 許赴增廣東堂初試 幼學則直赴增廣監試覆試事 分付 …(중략)…

<표 15>를 보면 세 번째 시기 역시 대부분의 절제가 통방외 절제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기와 비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는 응시인원의 규모가 전보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6>은 세 번째 시기 절제의 수권 수·참여자 수 보고사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6>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절제 수권 수·입문자 수 보고사례

| 분류 | 왕년 | 시험종류 | 수권수 | 입문자 수 | 통방외여부 |
|----|--------------|------|------------------------------------|----------|-------|
| 1 | 정조 18년(1794) | 삼일제 | 부 10,568장 | 23,900여인 | O |
| 2 | 정조 18년(1794) | 칠석제 | 전 200장, 부 6,053장 | 20,739인 | O |
| 3 | 정조 18년(1794) | 구일제 | 전 97장 | - | X |
| 4 | 정조 19년(1795) | 인일제 | 부 2,170장 | 5,000여인 | O |
| 5 | 정조 19년(1795) | 삼일제 | 부 902장, 명 234장, 배율 218장 고시 305장 | - | O |
| 6 | 정조 19년(1795) | 구일제 | 부·시·배율 1만 수권장 이상 | - | O |
| 7 | 정조 20년(1796) | 인일제 | 부 512장 | - | O |
| 8 | 정조 20년(1796) | 구일제 | 배율 38장 | - | X |
| 9 | 정조 21년(1797) | 삼일제 | 전 259장, 부 1,362장 | 5,973인 | O |
| 10 | 정조 21년(1797) | 칠석제 | 부 133장 | - | X |
| 11 | 정조 21년(1797) | 구일제 | 부 2,531장 | - | O |
| 12 | 정조 21년(1797) | 황감제 | 표 1350장 | 3,759인 | O |
| 13 | 정조 22년(1798) | 인일제 | 부 110장 | 133인 | X |
| 14 | 정조 22년(1798) | 삼일제 | 부 3,300장 | 9,753인 | O |
| 15 | 정조 22년(1798) | 칠석제 | 조 151장 | - | X |
| 16 | 정조 22년(1798) | 구일제 | 율부 143장 | - | X |
| 17 | 정조 22년(1798) | 황감제 | 부 1,316장 | 5,735인 | O |
| 18 | 정조 23년(1799) | 인일제 | 전 411장, 부 1,532장 | 7,823인 | O |
| 19 | 정조 23년(1799) | 삼일제 | 표 430장, 부 1,845장 | 7,923인 | O |
| 20 | 정조 23년(1799) | 칠석제 | 표·부 6,572장 | 37,953인 | O |
| 21 | 정조 23년(1799) | 구일제 | 표 343장, 부 1,603장 | 7,953인 | O |
| 22 | 정조 23년(1799) | 황감제 | 교 80장 | - | X |
| 23 | 정조 24년(1800) | 인일제 | 부 32,884장 | 103,579인 | O |
| 24 | 정조 24년(1800) | 삼일제 | 전 122장 | 359인 | X |

<표 16>을 보면 두 번째 시기보다 평균 응시 인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8년 이후부터는 수권수가 보고되는 통방외 절제 중 15차례가 수권 수

1,000장을 넘겼다. 정조 18년(1794) 부터 재위말까지 총 20번의 통방외 절제가 열린 것을 감안하면, 75%의 통방외 절제가 대규모로 열린 셈이다. 수권수와 입문자수가 모두 확인되는 사례에서 수권수가 약 1,000-3,000장 일 때, 입문자 수의 분포가 약 5,000-9,000인 임을 감안하면, 정조 재위 후반기에 방외유생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절제의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 응시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과거시험이 있는 경우 날짜를 조정하여 절제를 통해, 상경해 있는 유생들을 위무하였는데, 과거에 응시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절제에 참여하는 인원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조 대에 입문자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는 총 여섯 차례 발견되는데, 모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각도유생들이 상경했을 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이다. 여섯 번의 시험 전후로 있었던 과거와 수권 수, 입문자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정조 대 절제 입문자수 10,000인 이상 사례

| 구분 | 수권수 | 입문자수 | 대·소과 설행일 | 대·소과 수권수 | 대·소과 입문자수 |
|--------------------|---------------------|----------|-------------------------------|-------------|--------------|
| 정조 8년(1784) 구일제 | 표, 부 미상 | 18,000인 | 1일후 정시문과초시 ⁴¹⁾ | 미상 | 미상 |
| 정조 18(1794) 삼일제 | 부 10,568 | 23,900인 | 4일후 정시문과 초시 ⁴²⁾ | 미상 | 102,123인 |
| 정조 18(1794) 칠석제 | 전 200장, 부 6,053장 | 20,739인 | 2일후 감시초시 ⁴³⁾ | 미상 | 미상 |
| 정조 19(1795) 구일제 | 배울, 부 1만 수천장 | 미상 | 1일전 정시문과초시 ⁴⁴⁾ | 18,013장 | 21,605인 |
| 정조 23(1799) 칠석제 | 부 6572장 | 37,953인 | 3일후 알성문과 ⁴⁵⁾ | 12,593장 | 57,393인 |
| 정조 24(1800) 인일제 | 부 32884장 | 103,579인 | 1일전 정시문과초시 ⁴⁶⁾ | 38,614장 | 111,838인 |

41) 『承政院日記』 正祖 8年 9月 21日, ○李文源 以庭試文科初試三所試官意啓曰 俄者所下備忘記 依聖教 揭示懸題板 令入場多士一一知悉之意 敢啓 傳曰 知道.

42) 『日省錄』 正祖 18年 2月 25日, 設慶科庭試文科初試 一所試官 李家煥 南公轍 李肇源 南履翼 監試官 尹行直二所試官 李冕膺 李勉兢 崔獻重 李儒修 監試官 宋知濂三所試官 徐有臣 洪義浩 朴崙壽 鄭晚錫 監試官 沈鑿.

43) 『正祖實錄』 18年 8月 19日, ○癸酉/行監試初試.

44) 『日省錄』 正祖 19年 8月 28日, 合六慶大庭試文科初試開場 一所試官 趙鎮寬 朴宗甲 李翊模 崔光泰二所試官 李晚秀 成種仁 申鳳朝 金熙華. 一所入門舉子 一萬三百四十八人 給分二十三人 陳試許赴二人 收券八千七百七十張. 二所入門舉子 一萬一千二百五十七人 給分九十八人 陳試許赴

다음으로 시제를 살펴보자. <표 18>은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절제 시제 분포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8>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절제 시제 분포

| 구분 | 표·책·전·배울 | 부·명·송·조 | 복수시제 | 미상 | 총계 |
|-----------|----------|----------|----------|--------|------------|
| 즉위년~7년 | 25(80.7) | 4(12.9) | 0(0.0) | 2(6.4) | 31(100.0) |
| 정조8년~17년 | 21(42.0) | 14(28.0) | 13(26.0) | 2(4.0) | 50(100.0) |
| 정조18년~24년 | 8(25.8) | 17(54.8) | 6(19.4) | 0(0.0) | 31(100.0) |
| 합계 | 54(48.2) | 35(31.2) | 19(17.0) | 4(3.6) | 112(100.0) |

세 번째 시기 시제 분포의 특징적인 점은 부·명·송·조의 출제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향유를 포함한 대규모 통방외 절제가 많이 열린 만큼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명·송·조의 시제가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표·책·전·배울의 시제가 출제된 것은 주로 원점유생 절제였다. 이 시기에도 복수시제가 출제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들과는 달리 시제가 이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정조 재위기간 동안 전체 시제 분포를 본다면 표·책·전·배울의 비중이 절제 시제의 절반 가까이 되고 복수시제까지를 포함한다면 향유가 참석한 절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절제는 표·책·전·배울로 시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은사 규모를 살펴보자. <표 19>는 이 시기에 시행된 절제의 은사 규모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9>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절제 은사 규모

| 구분 | 직부전시 | 직부회시 | 급분 | 사물 | 기타 | 합계 |
|-----------|---------|-----------|-----------|-----------|---------|--------------|
| 즉위년~7년 | 9(5.9) | 41(27.0) | 41(27.0) | 61(40.1) | 0(0.0) | 152(100.0) |
| 정조8년~17년 | 31(5.1) | 126(20.7) | 249(40.9) | 144(23.6) | 59(9.7) | 609(100.0) |
| 정조18년~24년 | 17(2.7) | 149(23.7) | 368(58.5) | 95(15.1) | 0(0.0) | 629(100.0) |
| 합계 | 57(4.1) | 316(22.7) | 658(47.3) | 300(21.7) | 59(4.2) | 1,390(100.0) |

八人 收券九千二百四十三張.

45) 『日省錄』 正祖 23年 9月 30日, 具翼善冠 袞龍袍陞座. 文武科試官 率儒生及應射人行禮訖. 以夫子在座爲賦題. 儒生入門五萬七千三百九十三人 收券一萬二千五百九十三張.

46) 『日省錄』 正祖 24年 3月 21日, 設慶科庭試文武初試 文一所試官 …(중략)… 文一所設於禮曹而通中樞府 又北至于光化門外 南至于京兆府前路設布爲城. 入門三萬二千五百九十八人 收券一萬三千七百三十七張. 二所設於丕闡堂 而又東至于大成殿門外 南至于香橋. 入門三萬九千八百七十人 收券一萬五百二十張. 三所設於明倫堂 而又東至于食堂橋北至于碧松亭 與二所竝用布城. 入門三萬九千三百七十人 收券一萬四千三百五十七張. 三所入門合十一萬一千八百三十八人 收券三萬八千六百四十四張.

<표 19>에서 주목되는 점은 두 번째 시기에 비해 기간이 짧지만 은사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응시자의 규모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은사의 비중에서는 두 번째 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직부전시의 비중이 낮아지고 급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응시자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직부전시의 은사를 제한하고, 대부분의 은사를 급분으로 하사한 결과이다. <표 20>은 시험별 직부전시 인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20>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절제 시험별 직부전시 인원

| 구분 | 인일제 | 삼일제 | 칠석제 | 구일제 | 황감제 | 합계 |
|-----------|----------|---------|--------|----------|----------|-----------|
| 즉위년~7년 | 1(11.1) | 0(0.0) | 0(0.0) | 0(0.0) | 8(88.9) | 9(100.0) |
| 정조8년~17년 | 5(16.1) | 6(19.4) | 0(0.0) | 8(25.8) | 12(38.7) | 31(100.0) |
| 정조18년~24년 | 4(23.6) | 3(17.6) | 0(0.0) | 3(17.6) | 7(41.2) | 17(100.0) |
| 합계 | 10(17.5) | 9(15.8) | 0(0.0) | 11(19.3) | 27(47.4) | 57(100.0) |

<표 20>을 보면 두 번째 시기와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험에서 직부전시의 은사가 내려진다. 이 시기에도 직부전시 은사는 비교적 잘 제어되었다. 수 만 명 이상이 응시한 대규모 친림 절제 때에만 직부전시의 은사를 하사하였다. 또한 공통되게 칠석제에는 직부전시가 없는데 이는 시험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12회의 절제에서 57명에게만 직부전시를 하사한 것은 영조 대에 비해 직부전시의 은사를 잘 조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절제 1회당 직부전시자의 수를 영조 대와 비교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영조·정조 대 절제 1회당 직부전시자 수

| 구분 | 절제 시행횟수 | 직부전시자 수 | 절제 1회당 직부전시자 수(명) |
|------|---------|---------|-------------------|
| 영조 대 | 134 | 166 | 1.24 |
| 정조 대 | 112 | 57 | 0.51 |

<표 21>을 보면, 영조 대와 비교했을 때, 정조 대의 절제 1회당 직부전시자 수는 절반 이하이다. 시제의 분포와 종합해보면, 통방외 절제의 관행화는 막지 못하였지만, 시제의 부 편중화, 직부전시의 남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즉위 초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정조는 영조 대 인재선발제도의 문제점을 과거의 잦은 시행, 시제의 부 편중화, 통방외 과시의 관행화, 직부전시의 남발이라고 인식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위 초 과폐윤음을 반포하여 과거의 폐단을 조정의 가장 큰 폐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을 조정의 급선무로 제시하였다. 정조는 과폐윤음을 통해 실재선발을 위한 시제엄선, 과거남설 방지, 성균관을 통한 인재선발의 뜻을 밝혔다. 시제엄선과 과거남설 방지의 경우 정조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성균관을 통한 인재선발은 성균관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했다. 정조는 성균관 정상화를 위해 「태학생원점절목」을 반포하여 원점유생을 중심으로 성균관 과시를 운영할 뜻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조 대 절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 정조 대 절제의 운영상황은 응시 규모에 따라 세시기로 구분되고, 시기에 따라 운영양상이 변화된다. 세 가지 시기와 그에 따른 절제 운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조 즉위년(1776)부터 정조 7년(1783)까지는 원점유생중심으로 절제가 운영되었다. 정조는 「태학생원점절목」을 반포하여 많은 유생들을 성균관에 유회거재 시키고 원점 명부를 통해 성균관에 거재하지 않는 정원 외 유생까지 관리하려 하였다. 이 시기에는 「태학생원점절목」이 효과를 거두면서, 원점유생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성균관의 정원이 유생의 거재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정원수로 인해 성균관에 거재할 수 없었던 유생들은 성균관의 학사규정도 적용받지 못했고, 원점생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성균관 과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정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방외 절제의 시행을 확대한다. 이 시기 절제의 시제는 대부분 표·책·전·배율로 출제 되었고, 직부전시의 은사는 잘 제한되었다.

정조 8년(1784)부터 정조 17년(1793)까지는 통방외 절제가 점차로 확대되었다. 통방외 절제의 확대는 원점유생의 감소를 불러왔다. 늘어난 성균관 거재 수요로 인하여 원점유생절제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조는 법정 과시는 아니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은 응제에 주목하였다. 정조는 확대된 관학유생층을 통방외 절제를 통해 관리하는 한편 원점유생들은 응제를 통해 관리하였다. 원점유생절제의 역할을 응제로 대체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절제에 향유가 응시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많은 향유들이 상경하였을 때 정조는 통방외 절제를 시

행하고 경유와 향유를 각각 다른 시제로 시험하였다. 정조는 향유를 실재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경표향부, 생·진표유학부의 형태로 시제를 구분하여 교육·인재선발과 향유위무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정조 18년(1794)부터 정조 재위 말까지는 통방외 절제의 응시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증가한 응시자의 대부분은 향유였다. 시제는 경표향부, 생·진표유학부 형태로 출제되었다. 정조 18년(1794)부터 20번의 통방외 절제 중 15번이 수권수 1,000장이 넘는 대규모 통방외 절제였다. 특히 정조 18년(1794) 이후 입문자수 10,000인이 넘는 사례가 다섯 차례 발견되는데 이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각도유생들이 상경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 시기에는 시제가 일부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시제의 분리를 통해 관학유생의 학업점검과 성균관을 통한 인재선발이라는 절제 본연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절제의 시행특성을 이용해서 향유를 위로하였다.

정조는 성균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제를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당시 정조가 실제로 여겼던 경중의 생원·진사는 강경보다는 주로 제술을 선호하였고, 이들을 성균관에 거재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술시험인 절제가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재위기간 동안 원점유생을 중심으로 절제를 운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응제를 시행하여 그 역할을 대신했고, 절제의 응시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시제를 분리하거나, 직부전시의 은사는 제한하되, 급분의 은사를 늘리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인재선발과 유생위무를 실현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英祖實錄』
『正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全通編』
『太學志』

2. 논저

박현순(2013),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_____ (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지연(2018), 「숙종-정조대 성균관 과시 운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광만(2012),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22-2, 교육사학회.

_____ (2013),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23-2, 교육사학회.

_____ (2015a), 「18세기 과시의 유형」, 『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_____ (2015b), 「숙종 대의 과시정책과 운영」, 『한국교육사학』 37-2, 한국교육사학회.

_____ (2015c), 「영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3, 한국교육사학회.

_____ (2015d),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4, 한국교육사학회.

_____ (2016a), 「18세기 과시운영체제 연구」, 『교육사학연구』 26-1, 교육사학회.

_____ (2016b), 「조선후기 방외유생 응례분석」, 『교육사학연구』, 26-2, 교육사학회.

_____ (2018), 「조선후기 과시규정의 변화」, 『교육사학연구』 28-1, 교육사학회.

3. 역사자료 검색 시스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요약》

본 연구는 정조 대 절제(節製)의 구체적 시행 양상을 분석하여 정조 대 절제 운영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절제에 응시하는 유생들의 규모에 따라 정조 즉위년(1776)~정조 7년(1783), 정조 8년(1784)~정조 17년(1793), 정조 18년(1794)~정조 24년(1800) 세 시기로 구분하고, 통방외 여부, 시제, 은사규모를 중심으로 절제의 운영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조 즉위년(1776)부터 정조 7년(1783)까지는 「태학생원점절목」이 효과를 거두면서, 원점유생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균관의 정원이 유생의 거채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정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방외 절제의 시행을 확대한다. 이 시기 절제의 시제는 대부분 표·책·전·배율로 출제되었고, 직부전시의 은사는 잘 제한되었다.

정조 8년(1784)부터 정조 17년(1793)까지는 통방외 절제가 점차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절제에 향유가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많은 향유들이 상경하였을 때 정조는 통방외 절제를 시행하고 경유와 향유를 각각 다른 시제로 시험하였다. 정조는 향유를 실재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경표향부, 생·진표유학부의 형태로 시제를 구분하여 교육·인재선발과 향유위무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정조 18년(1794)부터 정조 재위 말까지는 통방외 절제의 응시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증가한 응시자의 대부분은 향유였다. 시제는 경표향부, 생·진표유학부 형태로 출제되었다. 정조 18년(1794)부터 20번의 통방외 절제 중 15번이 수권수 1,000장이 넘는 대규모 통방외 절제였다. 이 시기에는 시제가 일부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시제의 분리를 통해 관학유생의 학업점검과 성균관을 통한 인재선발이라는 절제 본연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향유를 위로하였다.

정조는 성균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제를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비록 재위기간 동안 원점유생을 중심으로 절제를 운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응제를 시행하여 그 역할을 대신했고, 절제의 응시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시제를 분리하거나, 직부전시의 은사는 제한하되, 급분의 은사를 늘리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인재선발과 유생위무를 실현하였다.

【주제어】 절제(節製), 절일제(節日製), 황감제(黃柑製), 통방외(通方外), 방외유생(方外儒生)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Sungkyunkwan Jeol-je
in the King Jeong-jo's reign***

Jeong, Sangjun(Jeonbuk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Assignment institute)

Yeo, Young-Gi(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Jeol-je(節製) in the King Jeong-jo's reign by analyzing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e Jeol-je in the King Jeong-jo's reign. To do so, we categorized the Jeol-je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tudents taking the examination: the year of the Jeong-jo's enthronement(1776) to the 7th year of the King Jeong-jo's reign(1783), the 8th year of the King Jeong-jo's reign(1784) to the 17th year of the King Jeong-jo's reign (1793), and the 18th year of the King Jeong-jo's reign(1794) to the 24th year of the King Jeong-jo's reign(18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rom the year of the King Jeong-jo's enthronement(1776) to the seventh year of the King Jeong-jo's reign(1783), the number of Sungkyunkwan's students increased dramatically. As a result, the number of Sungkyunkwan students could not afford the huge demand for students to live in Sungkyunkwan. To solve this problem, King Jeong-jo opens the qualifications for the examination.

From the 8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1784) to the 17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1793),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open the qualifications for Jeol-je. During this period, more and more rural students take the Jeol-je. When many rural students came to Han-sung(京) to take the Dae-gwa(大科)·So-gwa(小科), King Jeong-jo opened up qualifications for the Jeol-je. And the tes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2A03046685)

questions were given differently to students in Han-sung and rural students. This was to evaluate the two groups with different criteria and goals.

From the 18th year of King Jeongjo (1794) to the end of King Jeongjo's reign, the size of the students who applied for Jeol-j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10,000 people took the Jeol-je five times during this period.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students taking the Dae-gwa·So-gw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Most of the increased applicants were rural students. Even during this period, the test questions of Hansung students and rural students were different.

King Jeong-jo used the A test as an important policy tool to normalize Sungkyunkwan education.

Although during King Jeong-jo's reign, King Jeong-jo opened up qualifications for the Jeol-je, he replaced the role of Jeol-je through Eungje(應製). And as the size of students taking the Jeol-je grew, they separated the test questions and exercised flexibility to select talent and comfort students.

Key words : Jeol-je(節製), Jeolil-je(節日製), Hwanggam-je(黃柑製), Bangwoe students(方外儒生), the phenomenon of Sungkyunkwan examination openness(通方外)

§ 논문 투고 : 2023. 03. 19.

§ 심사 시작 : 2023. 03. 28.

§ 게재 결정 : 2023. 04. 10.